##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2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김동아・이병진・허성무

한정애 · 서미화 · 서삼석

전현희 · 김영배 · 박정현

정을호 · 고민정 · 이정문

김문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 18조의2 및 제18조의3).

법률 제 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       | 3                       |
| 당하여 <u>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u> |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            |
| 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 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 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       |
| 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 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       |
| 없다.                     | 저                       |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      |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      |
| 소) ① (생 략)              | 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 ②                       |
| 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                         |
|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                         |
| 다. <u>&lt;단서 신설&gt;</u> |                         |
|                         |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
|                         | <u>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u> |
|                         | <u>다.</u>               |